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윤 영 철*

국 | 문 | 요 | 약

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은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전자감시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 법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동 법률의 부정적 특징에 기인한다. 동 법률의 부정적 특징은 예컨대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만을 겨냥한 전자감시,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 장기 전자감시(최장 10년)의 형기만료자제로의 확장, 동 법률이 적용되는 전자감시의 형벌적 성격,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공개 제도의 적용대상자의 일부 중첩 등이다. 이러한 부정적 특징은 장치 인권침해의 문제, 헌법상의 평등 원칙의 침해문제, 이중처벌의 문제, 비례성원칙의 위반문제,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에 기초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구선진국과 같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곧바로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우선적 도입이 아니라, 시범적 운영을 통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적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성격교정·치료 및 성행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법치국가적 원칙에 부합하고 인권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집중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로 시작하여 점차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로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이다.

- ❖ 주제어 : 전자감시제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범죄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 증대는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양적 증대는 형사사법의 업무과중과 비효율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과중한 재정부담, 재범률의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와 격리와 구금을 통한 시설내처우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기술, 정보기술 및 위성추적확인기술 등을 사회내처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로써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전자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사회내처우제도로 ‘전자감시제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요구와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절감의 현실적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의 과학기술을 감시·감독체계에 응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완화, 구금비용의 절감, 과중한 교정업무의 완화, 구금 없이 구금목적의 충족가능성은 물론,¹⁾ 전자감시대상자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며, 법원이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다.²⁾

이러한 이유로 전자감시제도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 운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조금씩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보호관찰실무측에서 전자감시제도의 검토

1)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교정연구 제11호(2000), 한국교정학회, 36면 참조.

2)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117면 이하.

3) 외국의 전자감시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참조.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1999년에는 학계에서 처음으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보호관찰실무측에서 서울지역의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성감시장치에 의한 야간외출금지명령제도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05년 몇 건의 성폭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라는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다시 재점화되어 2005년 7월에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박세환 의원의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안은 일부 수정 및 추가를 거쳐 2007년 4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자 2008년 6월 13일 제2차 일부개정을 통해 금년 9월 1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은 곧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즉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이라 한다)상의 전자감시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동 법률상의 전자감시제도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전자감시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감시제도보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상의 전자감시제도의 특징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동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특징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의 근거가 되는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 법률상의 전자감시제도의 특징은 다

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가 특정 (성폭력)범죄자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제1조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도입했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이 성폭력범죄에 한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제2조 제1호⁵⁾는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통해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 중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이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을 성폭력범죄로 한정된 데에는 최근 마스크를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었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사건, 이러한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사회안전을 담보해달라는 강력한 여론,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⁶⁾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가 한편으로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 법률에 의해 전자감시제도가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에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성폭력범죄의 기수범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미수범에까지 넓게 확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를

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정의)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동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2, 199면 참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강간 및 성폭력범죄 총 8,664건 중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가 4,571건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284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동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전자감시제도는 서구선진국에서와 같은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여 과밀수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와 같이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동 법률은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에 형기만료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제2장에서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표제 하에 정상적으로 형기를 만료한 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법률의 세 번째 특징에서 언급된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동 법률의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징벌적·규제적 성격이 강한 실질적인 형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동 법률이 제2조 제2호⁷⁾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감시장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서 무선송·수신추적감시방식 또는 탐지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소형발신기가 계속적으로 무선시호를 발신하면 대상자의 주거지 인근을 순회하는 감시자의 차량에 부착된 수신기나 감시자가 소지하는 휴대용 수신기로 대상자의 제한범위 주거지 내 거주여부 등의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⁸⁾ 동 법률은 또한 제9조의2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는 단순한 감시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징벌적·규제적 성격이 강한 ‘전자적 형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7) 동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김혜정, 앞의 글, 111면;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117면 참조. 이 방식은 대상자가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준수사항의 위반시 순회하는 감시자가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즉각 대응함으로써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여섯 번째로 동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된다.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본래 동 법률의 제정시에는 5년이었으나, 2008년 6월 13일 제2차 일부개정예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살인사건으로 들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은 제9조의2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감시 제도에 미국에서와 같이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구금에 준하는 강력한 징벌적·규제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 법률은 이러한 징벌적·규제적 제재수단을 최장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동 법률은 전자감시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률 제39조⁹⁾에 의하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제9조의 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궁극적으로 전자감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조치¹⁰⁾가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 재사회화목적, 전자감시제도의 취지 등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여덟 번째로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공개제도의 적용대상자¹¹⁾와 일부 중첩된다는 점이다. 동 법률 제2조 제1호 다

9) 동 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예컨대 준수사항의 1회 위반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 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

목의 죄 중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신상공개제도와 동시에 전자감시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로써 해당자는 과도한 이중부담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여기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앞에서 언급된 특징 중에서 첫 번째(특정 범죄만을 목표로 함), 세 번째(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 네 번째(형기만료자에 대한 적용), 여섯 번째(장기의 전자감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평등원칙의 위배문제

동 법률과 같이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범위를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로 제한할 경

-
- 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우에는 다른 범죄에 대한 불평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즉, 왜 전자감시제도가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동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성폭력범죄, 특히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완화해주거나 제거해주기 위한 전문적인 성격교정·치료 및 성행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 범죄자의 ‘인격장애’나 ‘성격장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적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적 성폭력범죄자는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로 부적절한 바, 이들에게는 오히려 교정시설 수용을 통한 격리조치가 더 필요할 것이다.¹²⁾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의 종료 또는 가중료 후 장기의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보다는 형기 내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감호와 연계한 집중적인 성행교육 및 성격치료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선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는 성폭력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은 차별적인 법적책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전자감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미국¹³⁾을 비롯한 기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본래취지는 과잉구금에 의한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이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로는 일반적으로 비폭력적 범죄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범죄자, 중요범죄의 전과가 없는 자 등이 제시되었다.¹⁴⁾ 그리고 전자감시제도의 초기도입의 형태도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형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회내처우형이었다. 즉,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전자감시를 가석방자에 대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자유형 대신 보호관찰에 전자감시를 병과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¹⁵⁾ 최근에는 비로

12) 우경희,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6, 69면, 76면 참조.

13) 미국 전자감시제도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문승, 앞의 글, 45면 이하 참조.

14) 김혜정, 앞의 글, 120면 참조.

15) 김혜정, 앞의 글, 113면 참조.

소 특정 범죄의 재범방지에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전자감시제도의 무리한 강화조치로 인한 범죄자처우의 실패와 더 나아가 전자감시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자감시제도에의 신중한 접근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우선적 도입이 아니라, 신중하게 단계적이고 시범적으로 먼저 집중보호관찰의 형태로 시작하여 그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그 정당성·실효성 등에 대한 사회내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우선적 도입은 매우 급진적이고 성급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 인권침해의 문제

동 법률에 따라 형기만료자에게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제2의 낙인효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동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장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로서 팔찌나 발찌의 형태로 부착되므로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자는 자유로운 대인접촉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며, 적용대상자의 가족 등은 이웃과 친구들의 따돌림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¹⁶⁾ 전자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한 낙인효과는 전자감시대상자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일과 책임을 맡기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치명상을 입게 되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¹⁷⁾ 일단 범죄적 낙인이 찍히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인효과가 각인되어¹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는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즉,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통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오히려 차단하고 방해하

16) 김혜정, 앞의 글, 107면; 우경희, 앞의 논문, 80면; 이동임, 앞의 논문, 197면; 정완(역),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1999년 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3면 참조.

17) 이동임, 앞의 논문, 79면 참조.

18) 최영인/염건령,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백산출판사, 2005, 174면 참조.

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은 더 나아가 범죄자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 등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의 가족에게는 인격형성의 악영향, 가출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¹⁹⁾

동 법률의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또한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기관이 강제로 부작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행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제도가 날로 발전하는 전자장치의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감시대상자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²⁰⁾ 전자감시에 의해 특히 육안으로 감시할 수 없는 정보까지도 획득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사생활침해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중처벌의 문제

우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동 법률에서와 같이 전자감시제도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형기만료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는 사회방위를 위한 사후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징벌적·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심각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인격권의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성폭력범죄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일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감시제도의 시범적 운영 없이 단순히 보안처분이론에 입각하여 사회방위의 명목으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1981년에 사회안전 유지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보호감호제도²¹⁾ 등을

19) 이동임, 앞의 논문, 80면 참조.

20) 우경희, 앞의 논문, 48면 참조.

21) ‘보호감호제도’란 비슷한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비슷한 범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보호감호소로 옮겨져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이 반인권적 이중처벌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6년 6월에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범가능성에 기초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²²⁾에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또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²³⁾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 또는 가능성은 범죄를 일으킬지 여부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제도의 높은 남용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의 남용과 이로 인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의 문제로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를 전자적으로 재연해야만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에 제기되었던 이중처벌의 문제는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논거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제도뿐만 아니라 전자감시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 등의 위헌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었으며, 그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긴 했지만,²⁴⁾ 수적으로는 4대 5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다.

7년 이내 기간 동안 격리시키는 제도이다.

22) 동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3) 이동임, 앞의 논문, 198면 참조.

24) 헌재결 2003.6.26, 2002헌가14(전원재판부).

뿐만 아니라 동 법률상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이중처벌, 과잉처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보다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기관이 강제로 부착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징벌적·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제도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공개제도와 전자감시제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자에게 과도한 이중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이중처벌의 문제 등에 근거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비례성원칙의 위배문제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가 적용근거로 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습성 등의 형의 선고시에나 형집행단계 및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처우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에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와는 달리, 형의 집행종료 이후에 불확실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는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시간적 연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형기를 마친 후에는 과거에 범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맥락에서 볼 때도 자명하고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형벌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자를 동일한 범죄의 불확실한 재범가능성을 근거로 다시 국가형벌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아직 범죄를 범하지 않은 자를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는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²⁵⁾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25) 이동임, 앞의 논문, 199면.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완화해주거나 제거해주기 위한 전문적인 성격교정·치료 및 성행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의 반론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동 법률은 또한 특정 성폭력범죄의 형기만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무려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Florida주와 Colorado주)은 종신, 호주(Victoria주)는 15년,²⁶⁾ 영국은 8년,²⁷⁾ 프랑스는 6년²⁸⁾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전자감시제도를 보호관찰에 수반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자유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기간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운용을 해본 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전자감시를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의 형기만료자에게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감시의 어떠한 시범적 운용이나 단계적 접근이 거의 없이 곧바로 인권 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방위에 기초한 특정범죄의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 법률 제9조의2는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다양한 부가적인 준수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준수사항 중에서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는 미국에서와 같은 가택구금에 연계된 전자감시²⁹⁾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게 되어 강력한 징벌적·규제적 성격의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초기의 전자감시 결과보고에 의하면, 전자감시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자감시 제도가 신체적인 자유의 제한은 물론 정신적·심리적 자유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의 전자감시(즉, 가택구금과 연계된 전자감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장기의 전자감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장기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

26) ‘Serious Sex Offenders Monitoring Act(중성범죄자감시법)’ 제14조.

27) ‘Criminal Justice Act 2003(형사사법법)’ 제227조.

28) ‘Code Pénal(형법)’ 제131-36-12조.

29)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택구금과 연계된 전자감시는 90일, 통행금지와 연계된 전자감시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106면 참조).

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형기만료자에게 미국의 가택구금에 연계된 전자감시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진 전자감시제도를 최장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시간적 연장으로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형기만료자에 대한 장기의 전자감시제도는 이중처벌의 문제 외에도 비례성 원칙의 위배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제도의 무리한 강화조치로서 범죄 자처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³⁰⁾ 더 나아가 전자감시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³¹⁾

5. 사회방위에 입각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문제

전자감시제도는 원래 교정시설의 과잉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사회내처우제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선호되는 범죄자 집단은 일반적으로 비폭력범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즉 경범죄자, 교통사범, 초범 등 소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자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집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내처우제도인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일반보호관찰 등이 부과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가 손쉽게 남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전자감시제도의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동 법률은 특히 재범장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기만료자에게 보호감호의 형태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징벌적·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형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로써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전자감시라는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형벌권 또는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³²⁾ 더 나아가 이는 전자

30)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전자감시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병선, 앞의 글, 106면 참조.

31) 우경희, 앞의 논문, 69면 참조.

32) 미국 Florida주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감시재택구금에 처해진 자 중에서 본래 구금에 처해져야 할 자는 약 70%이고, 전자감시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재택구금에 처해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30% 범위의 대상자에게 부과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사법망의 확대로

감시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미국에서도 Florida주³³⁾와 Colorado주³⁴⁾ 2개주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호주의 빅토리아주,³⁵⁾ 영국,³⁶⁾ 프랑스³⁷⁾ 등에서도 중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Colorado주의 ‘성범죄자감시법’은 성격장애와 성도착 등으로 인해 재범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게만 형기만료 후 제한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전자감시제도가 기존의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보다는 행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그 적용범위를 신중하게 특정범죄의 재범방지로 확대해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감시제도의 시범적 운영이나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없이 동 법률에 의해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에 기초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뜻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한 2중적 제한장치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으로 남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 법률에는 타 선진국에서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1호 내지 제4호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단순한 징검다리로서의 역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Hudy,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1999, S. 53 이하 참조).

33) ‘Jessica Lunsford Act 2005(제시카 런스포드법)’.

34) ‘Sex Offender Monitoring Act 1998(성범죄자감시법)’.

35) ‘Serious Sex Offenders Monitoring Act(중성범죄자감시법)’.

36) ‘Criminal Justice Act 2003(형사사법법)’.

37) ‘Code Pénal(형법)’.

38) Schmidt A. K.,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pp. 24 이하 참조.

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엄격성을 부과하여 전자감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2중적 제한장치로서의 역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명목으로 전자감시제도를 형기만료자에게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국가형벌권에 의한 사회통제망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차 형사사법과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6. 소 결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부정적 특징들, 특히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부정적인 결과들, 즉 평등원칙의 위배문제, 인권침해의 문제, 이중처벌의 문제, 비례성원칙의 위배문제,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 법률은 2006년 인권침해의 문제로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던 ‘사회보호법’을 특정 범죄의 영역에서 전자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 목적의 전자감시제도가 가지는 폐단 그리고 특정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전자감시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구선진국과 같이 과밀수용의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자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형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V.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타당성

1.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일반적으로 단기자유형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구금에 따른 악풍감영의 폐해로 경범죄자에게 범죄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³⁹⁾ 이는 단기자유형의 경우 교정이나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단기자유형을 부과 받은 자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교정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자⁴⁰⁾라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기자유형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무익한 형벌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자유형의 선고비율을 보면, 1년 미만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도 단기자유형의 선고비율이 높은 스웨덴과 네덜란드⁴¹⁾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와 과도한 구금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각 1997년과 1998년부터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⁴²⁾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수년간의 시범실시에 기초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정시설수용인원의 절감효과와 이로 인한 구금비용의 절감효과, 재범률의 감소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⁴³⁾

전자감시제도가 원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와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문제 및 구금의 폐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점을 감안해볼 때, 스웨덴(3개월 미만)과

39) 김혜정, 앞의 글, 129면; 우경희, 앞의 논문, 63면; 한영수, “단기자유형의 제문제”, 사회과학연구 제7집(2000),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63면 이하 참조.

40) 우경희, 앞의 논문, 63면 참조.

41) 스웨덴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은 63%, 3개월 미만의 자유형은 43.9%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은 75.9%, 3개월 미만의 자유형은 57%이다(Penological Information Bulletin Nr. 19 & 20, Dec. 1994-1995).

42) 김혜정, 앞의 글, 116면 이하 참조.

43) Schlömer, Der elektronisch überwachte Hausarrest, 1998, S. 121 이하; 우경희, 앞의 논문, 36면 이하, 40면 이하 참조.

네덜란드(6개월-1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년(집행할 실체형기 6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에 대한 선택형으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실무에서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이 선고되는 예가 매우 적으며, 선고형이 1년인 경우에도 구속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의 형기산입으로 인해 집행해야 할 실체형기가 6개월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⁴⁴⁾ 이는 1년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받는 자의 대부분이 구속피고인인 경우가 많아 법원이 최소한 구속기간보다는 길게 형기를 정하며, 형기가 구속기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⁵⁾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단기자유형은 집행해야 할 실체형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전자감시제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벌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는 형벌을 완화하고 구금의 제 폐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⁴⁶⁾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서는 적용대상자의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비폭력적인 범죄자,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자, 중요범죄의 전과가 없는 자, 약물남용의 전력이 없는 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보호관찰대상자가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감시제도가 단지 ‘적대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전락되어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호관찰형태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시제도가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은 보호관찰의 한 방법으로서의 활용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4) 한영수, 앞의 글, 282면 참조.

45) 우경희, 앞의 논문, 65면 참조.

46) 김혜정, 앞의 글, 138면 이하 참조.

에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 집중감독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와 조기가석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 세 가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미리 언급하자면, 이러한 전자감시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인력의 양적·질적 확대와 보호관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 또는 조기가석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호관찰대상자 또는 가석방되는 자에게 단지 추가조건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과밀수용의 실질적인 완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장차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 일반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시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을 확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 것⁴⁸⁾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보호관찰은 본래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특별예방목적에 기초하여 고안된 제도인데, 이러한 점에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재사회화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감독의 지침인 동시에 범죄인의 행위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호관찰의 준

47)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타당성에 대한 검토에서 ‘미결구금의 중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와 ‘형의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를 제외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에 비해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며, 무자력자에게도 형평성에 맞는 보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자감시에 의한 보석의 도입보다는 보증금납입조건부 보석의 보증금납입방법을 다양화(예컨대 보증금분할납부제도, 신원보증제도 등)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결구금의 중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는 인권침해문제 및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위배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곽병선, 앞의 글, 102면 참조. 반대의견: 김혜정, 앞의 글, 131면 이하; 우경희, 앞의 논문, 54면 이하 참조).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감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을 받았을 범죄자에게 형사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가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집행유예의 징벌성만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을 확대하는 데 불과하고 과밀수용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김혜정, 앞의 글, 131면; 우경희, 앞의 논문, 66면 참조).

48) 김혜정, 앞의 글, 131면; 박성수, 앞의 글, 129면 참조.

수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형벌목적이 그대로 고려되어야 보호관찰제도의 본래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⁴⁹⁾ 따라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곧바로 보호관찰의 실효 또는 취소를 통한 교정시설에의 수용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제재조치로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이 곧바로 교정시설에의 재구금으로 이어진다면,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실패가 고스란히 재구금의 폐해로 이어져 구금폐해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는 장차 구금비용의 막대한 증가, 구금의 교정효과 감소와 이로 인한 재범률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의 본래취지를 살려 일반보호관찰의 실패율을 줄이는 동시에 재구금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보호관찰에 비해 처벌적·통제적 제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사회화의 마지막 징검다리를 제공해주는 전자감시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재사회화 형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⁵⁰⁾으로 사료된다.

2) 집중감독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제도

보호관찰형태의 도입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집중감독보호관찰제도가 없었더라면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을 범죄자에게 전자감시에 의한 집중감독보호관찰을 이용하여 사회내에서 치우하는 방안일 것이다.

영국은 전자감시제도와 연계하여 2001년부터 10-17세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집중지도감독프로그램(ISSP: 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을, 2003년부터 18-20세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집중통제변화프로그램(ICCP: Intensive Control & Chance Programme)’⁵¹⁾을 실시하고 있다.⁵²⁾ 전자는 ‘사회내감시(Community Surveillance)’

49) 박성수, 앞의 글, 129면.

50) 박성수, 앞의 글, 129면 이하.

51) 본 프로그램은 범죄행동에 대한 통제와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를 통한 외출제한 조항, 범죄행동교정프로그램, 주당 최대 18시간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및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도입타당성 분석 및 법제화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132면 이하 참조).

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입방법을 포함하는 ‘집중적 사회내형벌(Intensive Community Sentence)’로서의 의미를 가진다.⁵³⁾ 특히 집중지도감독프로그램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주도면밀하게 감독되고 있음을 인식케 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에 안정적인 틀을 제공해준다.⁵⁴⁾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주에서 전자감시를 통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내처우를 함으로써 과밀구금 완화의 효과를 보고 있다.⁵⁵⁾ 호주의 경우에도 범죄자의 동의하에 집중보호관찰명령에 병과하여 준수사항의 준수여부를 전자감시장치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수시로 감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집중감독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제도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감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 확인 및 관리주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초집중보호관찰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보호관찰에 대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⁵⁷⁾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 소년법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집중감독보호관찰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감독보호관찰에는 일반보호관찰보다 수배의 업무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인력의 부족으로 집중감독보호관찰의 현실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⁵⁸⁾ 이러한 의미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의 내실화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은 집중감독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등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러한 제도의 적용대상자로는 대표적으로 소년범죄자, 성매매사범, 폭주족 등의 교통사범, 음주운전사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2) 김일수, 앞의 책, 125면.

53) 박성수, 앞의 글, 124면 참조.

54) 박성수, 앞의 글, 124면 참조.

55) 김혜정, 앞의 글, 131면 참조.

56)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EMP연구반, “보호관찰제도의 신기법 전자감시제도 - 재범억제 통해 사회재 적응 촉진, 비용절감과 형벌응보성효과 탁월”, 시큐리티월드 52(2001.5), 152면 참조.

57) 박성수, 앞의 글, 132면.

58) 박성수, 앞의 글, 133면 참조.

59) 김혜정, 앞의 글, 131면; 박성수, 앞의 글, 133면 참조.

3) 조기가석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

가석방제도는 본래 재소자의 수형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제73조의2에서 형기의 1/3이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석방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형기의 60% 이상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가석방하는 경우가 많은 바, 그 결과로 가석방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⁰⁾ 다시 말해서 재소기간을 단축시켜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가석방제도가 실무에서의 낮은 활용률로 인해 구금의 폐해가 심해지고 재범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수용의 완화, 가석방자의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 효과 등을 위해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은 제3장(가석방 및 가종료와 전자장치 부착) 제22조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의 가석방자에 대해 보호관찰에 추가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자감시제도가 지금까지 전자감시가 없었더라도 일반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을 성폭력범죄자에게 단지 추가조건으로 부과될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관찰관의 감시업무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가석방의 징벌성 강화로 인한 강경진압의 폐해만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가석방에 의한 실질적인 형기단축의 효과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⁶¹⁾

우리나라에서 가석방과 연계된 전자감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감시제도가 가석방의 조기화(예컨대 형기의 1/3)를 유도하여 결국 실질적인 사회내처우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효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⁶²⁾ 이러한 효과는 전자감시제도를 단순히 가석방조건을 강화하는 감시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벌대체수단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⁶³⁾ 예컨대 가석방대상자를 현재의 실무에서보다 조기에 석방시

60) 김혜정, 앞의 글, 130면; 박병선, 앞의 글, 103면 참조.

61) 우경희, 앞의 논문, 66면 이하 참조.

62) 영국의 경우 새로운 가석방제도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통금(Curfew Orders by Electronic Monitoring)'을 활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법무부,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12 참조).

63) 김혜정, 앞의 글, 130면 참조.

키면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할 경우, 적절한 제재와 함께 사회 내에서 재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⁶⁴⁾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전자감시제도의 제재적·감시적 성격으로 인해 가석방의 확대적용 및 가석방시점의 조기화와 이로 인한 가석방자의 재범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V. 나가는 말: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육과 치료

형사실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⁶⁾ 이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형벌부과는 재범방지에 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 법률에서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히 상습적) 성폭력범죄자들은 반복되는 형사처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적절한 범죄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특성으로 ‘상습성’이 제시되고 있는데,⁶⁷⁾ 상습성은 ‘인격장애’나 ‘성격장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직접적인 성욕보다는 부정적 자아의식, 열등감, 약자에 대한 편견 등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⁶⁸⁾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예방 또는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성격교정·치료 및 성행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방 및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확

64) 김혜정, 앞의 글, 130면 참조.

65) 광병선, 앞의 글, 103면; 우경희, 앞의 논문, 66면 참조.

66)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284면 참조.

67) 본 논문의 필자에게는 ‘상습성’을 성폭력범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68) 이동임, 앞의 논문, 186면.

립은 국민에 대한 봉사적 기능을 가지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특히 판결전조사제도⁶⁹⁾를 통해 적절한 총 형기를 정한 후 총 형기 내에서 자유형을 최소화하여 자유형을 피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범죄자의 치료가 형기 내에 가능하도록 시설내 집중적인 성격교정·치료 및 성행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는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것과 범죄피해자의 필요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는 친고죄규정의 삭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제2차적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조항의 신설(예컨대 성폭력전담수사관제의 도입,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의 동석·의견개진 및 절차감시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의 확립,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신 및 심리치료체계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아직 전자감시제도의 성폭력범죄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된 사례가 없고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감시제도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에 근거하여 (특히 형기만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의 발로로서, 성폭력범죄자를 전자감시제도의 재범방지효과를 실험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치국가적 이념에 기초한 인도적 형사정책이 아닌, 적대적 형사정책으로서 강력한 형사처벌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담보한다는 봉건적 형벌관에 대한 맹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이중처벌, 과잉처벌 등의 논란을 야기하는 전자감시제도보다는 전문적인 성격치료, 성행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기초한 치료감호가 비례성의 원칙과 실질적인 재사회화의 관점에 부합하는

69) 동 법률은 형기만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사에서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를 폭넓게 실시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보고서를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의 중요한 결정자료로 삼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병선, 앞의 글, 99면 이하, 각주 46)과 47) 참조).

훨씬 인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만약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특정 범죄자(특히 성폭력범죄자)를 겨냥한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먼저 집중보호관찰의 형태로 시작하여 그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그 정당성·실효성 등에 대한 사회내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형사정책 제13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도입타당성 분석 및 법제화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_____,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 외출제한과 가택구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 법무부,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12.
-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EMP연구반, “보호관찰제도의 신기법 전자감시제도 - 재범억제 통해 사회재적응 촉진, 비용절감과 형벌응보성효과 탁월”, 시큐리티월드 52, 2001.
-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교정연구 제11호, 한국교정학회, 2000.
- 우경희,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6.
-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 정완(역),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최인영/염건령,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백산출판사, 2005.
- 한영수, “단기자유형의 제문제”, 사회과학연구 제7집,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_____,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사회과학연구 제8집,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Black, Matt and Smith, Russell G.,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rend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254, May 2003.
- Hudy,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1999.
- Schlömer, Der elektronisch überwachte Hausarrest, 1998.
- Schmidt, Annesley K.,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Ein kritischer Beitrag zum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in Korea

Yoon, Young Cheol*

Neulich ist die koreanische Kriminal Justiz sehr interessiert im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im Hinblick auf die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n Verbrechen(insb. sexualen Gewaltverbrechen). Demzufolge ist das Gesetz über die Haftung eines elektronischen Apparates zur Verfolgung der Position von bestimmten sexualen Gewaltverbrecher am 27. 4. 2007 erlassen und wird am 1. 9. 2008 in Kraft gesetzt.

Aber in diesem Gesetz sind viele Probleme enthalten, die meistens auf seinen negativen Merkmale beruhen, z.B. der nur auf bestimmte Verbrechen(insb. sexualen Gewaltverbrechen) zielenden elektronischen Überwachung, dem Zweck zum Sozialschutz durch die Verhütung des Rückfalls, der Erstreckung auf Strafvollstreckung abschließende Verbrecher, der langfristigen elektronischen Überwachung (längste bis 10 Jahren), dem Charakter der durch dieses Gesetz angewandten elektronischen Überwachung als Strafwesen, der teilweisen Wiederholung des Gegenstandes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durch dieses Gesetz und der Veröffentlichung von persönlichen Informationen durch das Gesetz über den Sexuelschutz der Jugendlichen, usw. Diese Merkmale müssten ferner zu der Verletzung von Menschenrechten, dem Verstoß gegen das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 der Gleichheit, das Doppelbestrafungsverbot ("ne bis in idem") und das Übermaßverbot, der Auswirkungswirkung des Netzes sozialer Kontrolle durch die Criminal Justiz, usw. führen. Die Mehrheit von solchen Probleme geht gerade von der Einführung des auf dem Sozialschutz durch die

* Professor, College of Law, Hannam University, Ph.D. in Law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n sexualen Gewaltverbrecher gründenden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s aus. So müsste diese Einführung sehr radikal und unerwünschenswert in Korea sein, wo es anders als in amerikanisch-europäischen entwickelten Ländern ist, wo der elektronische Überwachungssystem für lange Zeit durch dessen Probeanwendung stufenweise und sorgfältig eingeführt worden ist.

Indessen handelt es sich für die wirksame Prävention und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sexualen Gewaltverbrecher in erster Linie um deren Verbesserung durch Erziehungs- und Heilbehandlungsprogramme, welche Persönlichkeitsverfall oder Charakterfehler, der die entscheidende Ursache von diesen Verbrechen sein müssten, sicher lösen können. Denn sie müsste den oben erwähnten wichtigen Prinzipien entsprechend und menschenrechtsfreundlich sein. In diesem Sinne würde es rational und vernünftig sein, dann anfangs von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für die intensive Aufsichtsbewährung bis die als ein Ersatzmittel für die kurzfristige Freiheitsstrafe stufenweise und durch deren ausreichende Probezeit anzuwenden und danach erst mit der ordentlichen Einführung des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s rechnen, auch wenn er eingeführt wird.

❖ Keywords : Schlüsselwörter: Elektronischer Überwachungssystem, das Gesetz über die Haftung eines elektronischen Apparates zur Verfolgung der Position von bestimmten sexualen Gewaltverbrecher, das Doppelbestrafungsverbot, das Übermaßverbot, Erziehung und Heilbehandlung von sexualen Gewaltverbrecher für die wirksame Prävention und Verhütung deren Rückfalls